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73
----------	-------

발의연월일 : 2026. 9. 14.

발 의 자 : 김 현 · 김동아 · 권향엽
강준현 · 윤준병 · 황정아
채현일 · 이주희 · 주철현
김우영 · 이광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언론진흥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금별 재정 여건에도 변화가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확

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차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財源) 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 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 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 당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차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입금